



파생장해 장해율 산정 관련 대법원판례 및 장해분류표 개정안의 내용

황현아 연구위원

장해분류표상 파생장해의 장해율 산정 방법은 관련 규정 문언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동안 끊임없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최근 금감원에서 마련한 개정 장해분류표는 파생장해의 장해율 산정 방법을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 다만 여전히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일부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¹⁾는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되,²⁾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통상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및 동일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음³⁾**

● 그런데 위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복수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지급률 합산 대상인지, 가장 높은 지급률만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 **대법원은 신경계 장애의 파생장해로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경계 장애의 지급률과 파생장해의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복수의 파생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급률을 비교하는**

- 1) 현재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 사용) 표준약관은 동일한 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음(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중 부표3 및 부표 9 참조)
- 2)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사용) 표준약관]
제4조 ⑩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참고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함)
-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부표 3 및 부표 9 장해분류표]
총칙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따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것이 아니라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2011년 대법원 판결⁴⁾은 파생장해 지급률 산정과 관련하여, 신경계 장애에 다른 신체부위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체부위 장애와 신경계 장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각각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위 판례 사안에서는 좌하지 족관절 운동장애(a),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애(b)와 좌하지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장애(A)가 문제되었는데, 원심은 a와 b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적용하였으나, 대법원은 a, b 및 A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 비교하여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본래 위 판결의 취지는 신경장애에 의한 후유장해 지급률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있었음에도, 복수의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은 점이 부각되어 이후 복수의 파생장해 발생 시 지급률 합산 여부에 관한 분쟁을 촉발하는 단초가 되었음
- 2015년 대법원 판결⁵⁾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운동기능 저하(A) 및 이로 인한 견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및 손가락에 운동장애가 발생하고(a1, a2, a3, a4), 동시에 청력 장애(b)가 발생한 사안에서,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에 해당하는 운동장애들(a1~a4), 즉 복수의 파생장해들의 경우 그 지급률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위 판례 사안에서 대법원은 척수 손상(신경계 장애)으로 인한 후유장해(A)의 지급률(35%)과 척수 손상으로부터 파생된 운동 장애 지급률의 합산(a1=10%, a2=5%, a3=10%, a4=10%, 총 35%) 중 높은 지급률인 35%에 청력장애의 후유장해 지급률(b=25%)을 더하여 6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2016년 대법원 판결⁶⁾ 또한 계단에서 미끄러져 신경계 장애인 경추척수증(A), 그 파생장해인 우측 팔,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애(a1, a2, a3), 추간판탈출증을 입은 사례에서, 우측 팔,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애의 합산 지급률(a1+a2+a3)과 경추척수증의 지급률(A) 중 더 높은 지급률을 구한 다음, 그 지급률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이번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위와 같은 해석상 분쟁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파생장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개정안의 핵심은 하나의 장애(A)에서 복수의 파생장해(a1~aN)가 발생한 경우 그 파생장해의 지

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6301 판결

5)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급률을 합산한 지급률($a_1+a_2+\dots+a_N$)과 최초 장애 지급률(A)을 비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표 1〉 파생장애 장애율 산정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3. 기타	3. 장애의 판정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u>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u>

■ 위 개정안은 당초 불분명하였던 복수의 파생장애 지급률 산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향후 신경계 장애로 인한 파생장애 발생 시 그 지급률 산정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위 개정안은 그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해석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항 및 개정안은 (i) 하나의 장애가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 (ii)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⁷⁾
 - － 즉 (i)의 경우 및 (ii)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는 하나이므로 둘 중 높은 장애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임

7) 짐작컨대, 위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절 장애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기본원칙) ⑤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이하 “장애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애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 그러나 현행 규정 및 개정안 규정의 문언은 본래의 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kiri**

〈표 2〉 파생장해 장애율 산정 관련 수정제안

개정안	수정 제안
3. 장애의 판정	3. 장애의 판정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애가 장애분류표상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에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